

언론중재법 시행과 조정 양상 변화 연구

조 준 원

언론중재위원회 예산회계팀 차장

I. 들어가며

2005년 언론중재위원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의 제정이 그것이다. 언론중재법은 그동안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등에 분산 규정되었던 언론 피해 관련 조항을 포괄하는 단일법이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의 영역과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먼저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의 보도 게재 여부에 관해서만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손해배상까지 다루게 함으로써 조정 영역이 확대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조정대상도 넓혀져 인터넷신문이 조정대상에 포함되었다. 새로운 매체로서 등장한 온라인 매체로서 인터넷신문의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키워가는 온라인 언론매체를 기존 언론에 편입한 것으로,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조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2009년에는 언론피해구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도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언론중재위원회는 형사상 명예훼손죄와 방영금지가 처분을 제외한 언론분쟁으로 인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분쟁을 모두 조정대상에 포함하게 되었고, 포털 등 언론보도 매개체로 인한 피해까지 구제하는 종합적인 언론보도피해구제 기관으로 거듭났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온라인매체의 조정대상 편입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형식과 내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리라 짐작된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은 단지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 피해구제보도의 성립여부만으로 조정의 성패를 기능했던 양상과 달리 중재부나 양당사자에게 확장된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였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신문 등 온라인 언론과 오프라인 언론사의 기사배열과 편집양식, 매체 기술상의 차이는 정정이나 반론문의 보도 방법은 물론 피해구제 형식과 내용에 있어 아무래도 달리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온라인매체의 조정대상 편입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형식과 내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새로운 청구권의 도입과 조정대상의 확대가 조정 양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중심으로, 세부적으로는 청구권의 확장에 따른 조정 양상의 변화, 포털 및 인터넷 언론에 대한 조정의 특징, 피해구제보도문 형식과 내용, 조정과정에서 피해구제보도문의 매체별 특성 고려 여부를 등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이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의 조정성립 사례를 분석하여 알아보고, 보다 효과적인 피해구제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1. 연구문제 및 방법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2005년 7월 28일부터 2009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접수, 처리한 조정신청사건 가운데 조정성립¹⁾된 사건을 분석하여 조정 양상 현황과 변화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고자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온라인언론매체의 조정대상 편입으로 나타난 조정 양상의 변화는 어떠한가?

조정은 복잡한 법리에 얽매이지 않고 이해와 설득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따라서 분쟁당사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쟁해결방안에 대해 중재부에서 유연한 자세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한 조정안에 통상적인 보도내용 및 보도방법 외에 다른 해결책이 부수적으로 또는 화해의 결정적인 히든카드로 제시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어떠한 화해방안이 제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피해구제보도문의 보도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피해구제보도문의

1) 언론중재위원회는 2008년부터 조정신청사건 처리 유형 중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이른 처리를 '조정성립'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2005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의 조정신청처리 유형 중 '합의'는 '조정성립'과 동일한 것으로 이 글에서는 합의와 조정성립을 구분하지 않고 '조정성립'으로 통일하여 칭하기로 한다.

매체별 특성이 어느정도 고려되고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풀기 위해 이 연구는 조정성립사건에 대한 내용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2. 분석대상 및 자료 수집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 가운데 피해구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조정성립 외에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한 사건 가운데 동의한 사건,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였지만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이 이루어진 사건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양 당사자간 자율적인 의견 조율과 중재부의 조정이 상호작용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조정성립한 사건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조정신청사례를 정리하여 발행

하는 2005~2009 <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²⁾에 게재된 조정성립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III. 분석결과

1. 조사대상 사건 개요

2005년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7월 28일부터 2009년 말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한 사건 가운데 조정성립에 이른 사건은 총 1,42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표한 조정성립건수 1,817건과 다소 차이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신청 건수를 청구 수를 기준으로 집계, 발표하고 있지만 연구자는 주 연구자료인 <언론조정 및 중재사례집>에 수록된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표 1> 조사대상 사건의 피신청인 현황

| 연도 피신청인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 일간신문 | 82 | 170 | 157 | 144 | 142 | 695(48.7%) |
| 주간신문 | 29 | 47 | 37 | 39 | 44 | 196(13.7%) |
| 월간지 | 3 | 4 | 5 | 2 | 6 | 20(1.4%) |
| 방송뉴스 | 21 | 32 | 45 | 39 | 47 | 184(12.9%) |
| 시사고발 프로그램 등 | 3 | 18 | 13 | 18 | 15 | 67(4.7%) |
| 인터넷신문 | 15 | 24 | 33 | 40 | 87 | 199(13.9%) |
| 포털 | - | - | - | - | 26 | 26(1.8%) |
| 뉴스통신 | 1 | 4 | 9 | 10 | 14 | 38(2.7%) |
| 기타 | - | 1 | 1 | - | - | 2(0.1%) |
| 계 | 154 | 300 | 300 | 292 | 381 | 1,427 |

2) 이 책자는 2007년까지 <연차보고서>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부제소 조항 등 부대조건을 단서조항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정한 데서 이유가 있다.³⁾

연구대상사건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간신문을 상대로 조정 신청한 사건이 가장 많은 48.7%를 차지했고, 2005년 처음 조정대상이 된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이 13.9%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주간신문(13.7%), 방송뉴스(12.9%)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8월 7일부터 조정대상에 포함된 포털은 총 26건(1.8%)였다.

이 연구는 조정과정에서 매체별 특성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한 주제이다. 연구 취지에 따라 매체유형을 발행 주거나 방송 프로그램 방영주기를 기준으로 신문은 일간신문, 주간신문, 월간지로 세분화했으며, 방송도 매일 방영되는 방송뉴스와 시사고발프로그램 등 주간단위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나누어 조사했다. 피해구제보도문의 보도방법이나 조정신청일로부터 게재일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조사, 분석함에 있어 발행 및 방송주기를 고려해야 조사결과가 왜곡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사건이 51.3%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이 32.3%, 반론보도청구 사건이 14.0%, 추후보도청구사건이 2.3%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조정성립한 사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처리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망라한 전체적인 청

〈표 2〉 조사대상 사건의 청구권별 현황

| 청구명 \ 연 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 정정보도청구 | 107 (53.5%) | 226 (50.7%) | 227 (52.3%) | 220 (50.1%) | 285 (51.1%) | 1,065 (51.3%) |
| 반론보도청구 | 29 (14.5%) | 79 (17.7%) | 55 (12.7%) | 58 (13.2%) | 70 (12.6%) | 291 (14.0%) |
| 손해배상청구 | 56 (28.0%) | 130 (29.1%) | 146 (33.6%) | 151 (34.4%) | 189 (33.9%) | 672 (32.3%) |
| 추후보도청구 | 8 (4.0%) | 11 (2.5%) | 6 (1.4%) | 10 (2.3%) | 13 (2.3%) | 48 (2.3%) |
| 계 | 200 | 446 | 434 | 439 | 557 | 2,076 |

3)

(2005. 7. 28.~2009. 12. 31.)

| 구 분 \ 연 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 조정성립건수 | 162 | 356 | 359 | 402 | 538 | 1,817 |

구권별 추이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 화해를 위한 부대 조건

분쟁 당사자들간의 양보와 타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조정 성립은 불가능하다. 양 당사자들이 보도나 손해배상 외에 화해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피신청인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하는 조건으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부제소 조항을 합의의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2005년 15.6%에 불과했지만⁴⁾ 2006년 26.6%에서 2007년에는 50%를 훌쩍 넘더니 2008년 64.4%, 2009년에는 무려 6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건의 조정성립 사건 중 7건 가까이 부제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증가 추이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어 흥미롭다. 손해배상청구사건은 2007년부터 전체 조정신청사건의 30%를 넘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조정대상

보도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법적 분쟁을 조정 단계에서 종결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부제소 조항이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조건이라면, 보도나 위자료 지급 외에 추가로 피신청인측의 사과 또는 유감표명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합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⁵⁾ 때로는 부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편집국장명의 사과공문을 신청인에게 발송하거나(2008서울조정38사건) 구두로 유감을 표시하는 것(2008서울조정76)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경우도 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인 언론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배상 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⁶⁾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간접강제를 명시하는 경우는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간 중 21%로 2007년부터 20%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간접강제는 “피신청인이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얼마의 비율에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사항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3> 부대조항 현황

| 연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 부제소 합의 | 24(15.6%) | 80(26.6%) | 170(56.6%) | 188(64.4%) | 253(66.4%) | 715(50.1%) |
| 간접강제 | 12(7.8%) | 44(14.7%) | 89(29.6%) | 80(27.4%) | 75(19.7%) | 300(21.0%) |
| 사과(유감) 표명 | - | 4(1.3%) | 18(6%) | 35(12.0%) | 31(8.1%) | 88(6.2%) |
| 조사대상 사건 수 | 154 | 300 | 300 | 292 | 381 | 1,427 |

4) 언론중재법 시행 전인 2005년 1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부제소 조항이 포함된 사례는 5건에 그치고 있다.

5) 조정신청을 처리하는 담당 조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했던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봐도 신청인이 형식적으로는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피신청인측의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6)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언론중재>, 1991 겨울, p.82.

신청인이 청구한 청구권과 피해구제보도 내용이 비례하지는 않는다. 신청인은 정정보도를 선호하지만 조정과정에서 반론보도로 의견을 조율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부대조건을 단서조항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분명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3. 피해구제보도 내용분석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2009년까지 5년간 조정성립한 사건 가운데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 피해구제보도로 간주할 수 있는 보도를 하기로 조정성립된 사건은 총 1,248건이다. 1,248건의 보도를 그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피해구제보도 2건 가운데 1건은 반론보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론보도는 628건, 5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정정보도가 33.0%, 정정과 반론이 혼재된 경우가 104건, 8.3%로 조사됐다. 보도를 추후에 약속하며 신청인의 기고문이나 인터뷰 등을 게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하는 경우(2005서울조정150, 2005서울조정158 등)도 39건(3.1%)으로 화해를 위한 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비율이 적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신청인이 청구한 청구권과 피해구제보도 내용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은 정정보도청구를 한 사건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피해구제보도는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신청인은 정정보도를 선호하지만 조정과정에서 반론보도로 의견을 조율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정결과는 신청인의 무리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

〈표 4〉 피해구제보도 유형

| 보도내용 | 연 도 | | | | | 계 |
|-----------|------|------|------|------|------|-------------|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정정보도 | 46 | 94 | 83 | 81 | 108 | 412(33.0%) |
| 반론보도 | 83 | 155 | 118 | 119 | 153 | 628(50.3%) |
| 정정 및 반론보도 | - | 15 | 31 | 30 | 28 | 104(8.3%) |
| 추후보도 | 10 | 8 | 1 | 13 | 8 | 40(3.2%) |
| 사과보도 | 1 | 3 | 5 | 2 | 3 | 14(1.1%) |
| PR보도 | 1 | 1 | 4 | 4 | 1 | 11(0.9%) |
| 기고문 게재 등 | 2 | 11 | 9 | 5 | 12 | 39(3.1%) |
| 계 | 143 | 287 | 251 | 254 | 313 | 1,248(100%) |

답이 덜한 언론사측의 선호, 가능하면 조정을 성립시키려는 중재부의 의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피해구제보도문 제목 분석

반론보도가 피해구제보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데 이어 조정과정에서 보도문의 제목들은 피해구제의 취지에 부합하게 지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조정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고 있는 보도문의 제목은 형식적이고 건조한 표현의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과 같은 단지 정정이나 반론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목은 보도내용을 함축하여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어떠한 기사에 대한 누구의 반론인지, 어떠한 사실이 잘못 보도되었다는 것인지 기사내용을 촘촘히 읽어내가지 않는다면 알 수 없다. 그래서인지 “정정보도문”과 같은 제목은 점차 조정과정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어지고 있다. 조사결과 2005년과 2006년, 지배적이었던 이러한 제목 유형은 2007년 이후 급속히 주류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친절하게 기사 제목의 기능에 접근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관련 정정보도문”의 형식이 2007년부터 조정과정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2008년과 2009년에는 가장 많은 제목 유형으로 조정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분당 B상업계 고등학교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KBS 유○○ 아나운서 5공 특채자 관련 정정보도문”, “임○○씨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반론이나 정정을 제기

한 주체를 밝히거나 관련 기사 내용을 언급하는 형식이다.

일반적인 기사 제목이 갖는 기능과 작성 원칙을 구현한 유형을 ‘기사스타일’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연도별로 흐름의 변화는 없었으나 전체 피해구제보도의 약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장 아내 무혐의 - 억울하게 고소당해”(2005전북조정1), “서울중앙지검, 권○○ 강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2005서울조정204), “오모 교수 성상납 등 일부 무혐의”(2005대구조정1) 등과 같이 보도 내용의 핵심사항을 압축하여 간결하게 보여주는 기사제목의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한 제목 유형이다.

반면 기사의 오탈자나 행사 안내, 사고(社告) 등의 단순 정보를 알리는 내용과 전혀 구분이 가지 않는 제목을 피해구제보도문의 제목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감이다. 이러한 유형은 “고침”(2008서울조정240), “알림”(2009대구조정5), “알려왔습니다”(2009서울조정7), “밝혀왔습니다”(2009서울조정17, 2009서울조정57 등), “알립니다”(2009경기조정2), “알려드립니다”(2009서울조정61)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담고 있는 기사 내용에 비추어 부적절한 제목으로 보인다.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 또한 유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신문 지면을 통해 접하는 “바로잡습니다” 코너는 통상적으로 기사의 오탈자나 성명이나 상호, 날짜, 주소 등 단순한 정보의 오류를 바로잡는 코너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기사 당사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반박이나 주요한 팩트(fact)를 정정하는 피해구제보도를 “바로잡습

피해구제보도를 게재함에 있어 원보도 지면을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40%를 넘어서는 현실은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행히 원 보도 지면에 게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니다”라는 제하로 보도하는 것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오탈자”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진배없다고 할 것이다.

보도제목을 특정하지 않고 조정에 이르는 경우도 5.4%로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조정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보도형식과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서에 기술하는 것이 요구된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나 “언론조정합의문”(2005서울조정1, 2005서울조정 80 등)의 제하로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제목은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독자들에게 보도의 경위를 알려주는 장점이 있어 사안에 따라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자의든 타의든 자사의 지면과 프로그램을 통해 전해지는 정정보도이다. 그렇다면 언론사에서 스스로 생산한 기사와 동일하게 기사 제목 작성의 원칙을 적용하면 한결 나아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접할 수 있을 듯하다.

다음 소개하는 조정사례는 기사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지만 기사제목에 따라 수용자에게 전해지는 전달력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5> 보도문 제목 유형

| 기사제목 \ 연 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 정정(반론)보도문 | 91 (63.6%) | 157 (54.7%) | 95 (37.8%) | 68 (26.8%) | 53 (16.9%) | 464 (37.2%) |
| ... 관련 | 11 (7.7%) | 57 (19.9%) | 89 (35.5%) | 85 (33.5%) | 97 (31.0%) | 339 (27.2%) |
| 고침, 알림 등 | 2 (1.4%) | 14 (4.9%) | 16 (6.4%) | 29 (11.4%) | 81 (25.9%) | 142 (11.4%) |
| 기사 스타일 | 13 (9.1%) | 12 (4.2%) | 28 (11.2%) | 29 (11.4%) | 30 (9.6%) | 112 (9.0%) |
| 바로잡습니다 | 11 (7.7%) | 20 (7.0%) | 8 (3.2%) | 22 (8.7%) | 38 (12.1%) | 99 (7.9%) |
| 기사 제목 없음 | 7 (4.9%) | 20 (7.0%) | 9 (3.6%) | 18 (7.1%) | 13 (4.2%) | 67 (5.4%) |
| 조정합의문 | 8 (5.6%) | 7 (2.4%) | 6 (2.4%) | 3 (1.2%) | 1 (0.3%) | 25 (2.0%) |
| 계 | 143 | 287 | 251 | 254 | 313 | 1,248 |

(A) 제목 : 알림

본지 2009년 4월 1일자 “김○○ 의원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검찰이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수사결과 김의원은 박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2009서울조정137)

(B) 제목 : 김○○ 의원 무혐의

본지 2009년 3월 31일자 “박연차 회장의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후원금을 요구했으며 사법처리를 위한 최종 수순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은 김의원에 대한 무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후원금 내역을 살펴보았으며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2009부산조정3)

(A)와 (B) 기사 모두 모의원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 혐의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취지를 전하고 있으나 (A) 기사의 제목은 “알림”으로 해당 기사 내용이 무엇인지 기사제목만으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 반면 (B)기사의 제목은 기사 본문의 핵심을 함축 전달하는 “김○○ 의원 무혐의”로 정하여 독자들이 정정보도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였다. 정정이나 반론보도문의 요지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기사제목을 정한다면 “공정한 여론 형성”은 물론 언론피해자의 권익을 회복하는 데 한걸 도움을 줄 것은 자명하다. 언론사의 배려와 중재부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5. 피해구제보도 게재면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등의 보도가 공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도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바로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이 그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여러 보도방법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유일하게 보도지면, 방송채널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강제 조항이 아닌 이러한 법 규정이 얼마나 조정 과정에서 적용되고 있을까? 조정이 성립된 사건 중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을 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1,248건 사건 가운데 711건, 약 57.0%만이 동일한 지면, 채널에 게재 내지 방송하기로 합의했다. 중재부의 조정과 양 당사자의 의견이 상호작용하여 이른 결론이기는 하겠지만 원보도 지면을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40%를 넘어서는 현실은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원 보도 지면에 게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5년 52.4%에 불과하던 원보도 지면 게재율이 2008년 57.5%, 2009년에는 66.1%로 10% 이상 늘어났다.

원 보도지면에 게재하지 않은 사건 중 ‘독자투고’란이나 방송의 ‘옴부즈맨 프로그램’ 등에 보도하기로 합의한 사건이 가장 많아 신문 36건, 방송 13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바로잡습니다”란이 29건이었다.

독자투고란이나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을 게재하는 것은 정정·반론보도의 취지나 내용, 그리고 주목도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이전 법률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행주거나 프로그램의 방영주기, 매체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다. 특히 지면의 제약이 덜하고 편집이 용이한 인터넷언론의 이행기간이 오프라인 언론보다 짧게 나타난 것은 신속한 보도를 염두에 둔 결과로 해석된다.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⁷⁾ 현행법에는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규정 내용이 없다고 하여 독자투고란 등이 조정과정에서 거론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론보도 형식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법문에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중재부도 조정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방송뉴스의 경우 신청인이 문제 삼은 보도가 각 방송사의 프라임타임에 방영되는 뉴스 시간⁸⁾에 보도되었지만 반론, 정정보도 등은 아침뉴스나, 심야시간 뉴스 등 다른 방송시간대에 보도하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견되었다(2009서울조정214, 2009서울조정258, 2008서울조정108 등) 각 방송사 메인뉴스 시간을 피하고자 방송사측이 이용하는 카드로 보인다.

기타 2건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신청사건에서 반론보도를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해당 프로그램 소개면 등에 게재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취재파일4321> 홈페이지 초기화면 ‘공지사항&게시판’란 첫머리에 보도문을 게재”하는 방식(2007서울조정49)이다.

<표 6> 피해구제보도 게재면

| 구분 \ 연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 원 보도 지면과 동일 | 75 (52.4%) | 149 (51.9%) | 134 (53.4%) | 146 (57.5%) | 207 (66.1%) | 711 (57.0%) |
| 원 보도와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 | 68 | 138 | 117 | 108 | 106 | 537 (43.0%) |
| 소 계 | 143 | 287 | 251 | 254 | 313 | 1,248 |
| ‘바로잡습니다’란 | - | 3 | 2 | 10 | 14 | 29 |
| ‘오피니언’ ‘독자투고’란 | 4 | 14 | 6 | 5 | 7 | 36 |
| 옴부즈맨 프로그램 | 3 | 6 | 3 | - | 1 | 13 |
| 다른 뉴스시간 | 1 | 2 | 4 | 4 | 4 | 15 |
| 기 타 | - | - | 2 | - | - | 2 |
| 소 계 | 8 | 25 | 17 | 19 | 25 | 94 |

7)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8) KBS, MBC는 9시뉴스, SBS는 8시뉴스를 말한다.



6.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기간

조정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9조 제2항). 물론 이 조항은 훈시조항의 성격이 짙다. 조사자료인 <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을 통해 신청일로부터 처리까지 기간을 추적할 수는 없다. 신청일만 표시되어 있을 뿐 조정 성립일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래 <표 7>과 같이 언론중재위원회가 법문에 규정된 기한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는 신청접수일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이 이행된 날까지를 매체별로 조사한 것이다. 가장 신속하게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지는 매체는 온라인매체로 포털이 평균 12.6일, 인터넷신문이 13.2일로 법정처리 기한보다 짧은 시간에 처리되고 있었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간신문도 15.1일로 매우 신속하게 이행되고 있었다. 이어 방송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이 평균 17.6일, 시사고발프로그램 등이 평균 20.7일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매체는 주간신문으로 평균 21.3일 소요되었다.

발행주기나 프로그램 방영주기, 매체의 특성이 고

스란히 드러나는 이러한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만하다. 지면의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편집이 용이한 인터넷언론의 이행기간이 오프라인 언론보다 짧게 나타난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조정과정에서 신속한 보도를 염두에 둔 결과물로 해석된다.

7. 조정영역의 확장

1) 피해구제 매체영역의 외연 확대 : 전통 언론매체에서 온라인 매체까지

2005년 인터넷신문이 조정대상에 편입되었지만 각 신문·방송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여전히 피해구제 영역 밖에 방치되었다. 이후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유력 일간지가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언론사닷컴이나 포털 등이 새롭게 조정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지금도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는 법적 지위에 변함이 없다.

하지만 언론사닷컴을 별도 법인 형태의 계열사로 두고 있는 일부 신문사 외에도 지면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언론사와 방송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표 7> 조정신청일부터 피해구제보도일까지 소요 기간

| 연도 소요일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5년간 평균 소요일 |
|-----------|------|------|------|------|------|------------|
| 일간신문 | 12.9 | 14.5 | 16.2 | 16.7 | 15.2 | 15.1 |
| 주간신문 | 18.6 | 19.9 | 21.1 | 25.6 | 21.5 | 21.3 |
| 방송뉴스 | 13.6 | 16.9 | 20.9 | 18.4 | 18.1 | 17.6 |
| 시사고발프로 등 | 19.7 | 18.2 | 17.5 | 20.4 | 27.7 | 20.7 |
| 인터넷신문 | 13.1 | 11.2 | 13.3 | 14.9 | 13.7 | 13.2 |
| 포털 | - | - | - | - | 12.6 | 12.6 |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역에서도 피해구제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피해구제보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도록 합의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를 통해 자사 기사를 네티즌에게 공급하고 있다. 별도 법인이 아닌 형태로 언론사닷컴을 운영하는 일부 중앙일간지와 대다수 지방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 이후에도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비독립법인 언론사닷컴에 대해 인터넷신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⁹⁾ 여전히 법적 지위는 불분명하지만 조정은 복잡한 법리를 요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조정영역을 보다 폭넓게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신문이 조정대상에 포함된 이후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사건 가운데 오프라인 언론사를 상대로 신청한 사건 가운데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포털 등에도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의사항에 포함한 사례를 살펴본 것이다. 조사결과 점차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역에서도 피해구제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지 2년 여가 지난 2008년부터 오프라인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게재하기로 한 경우의 30% 이상이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포털 등 온라인에서도 피해구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의사항에 포함하고 있었다. 2007년까지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정정보도 등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가 약 10% 안팎의 비율로 별 변화가 없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만 6세 이상 인터넷이용자의 51.6%가 인터넷을 통해 신문물을 읽고 있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69.5%가 인터넷신문 독자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뉴스이용자의 대부분(95.7%)이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통해 뉴스 기사를 접하고 있으며, 신문사사이트 및 인터넷신문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38.9%, 32.2%에 이른다고 한다.¹⁰⁾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적 지위 논란과 관

9) 인터넷신문의 범위에서 제외된 방송사닷컴, 비독립법인 언론사닷컴에 대한 언론 조정 실무상의 쟁점은 양재규,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 검토”, <언론중재>, 2009년 겨울호 참조.

10) <2009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계없이 조정영역의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조정대상 기사가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다면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피해구제보도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합의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피해구제영역의 다양성 확장: 기사삭제와 수정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청구하거나 정신적인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아직 온라인매체의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 망을 통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구제 방법은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사삭제청구권은 새로운 권리 개념으로 제안되고 있다. 기사삭제청구권을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언론중재법에

명문화하여 조정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¹¹⁾이나 인터넷에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개념의 입법화 논의¹²⁾도 같은 맥락이다.

언론중재법에 청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인 강한 전파력 때문이다. 다른 매체와 달리 기술적으로 가능한 측면도 바탕에 깔려 있다.¹³⁾

기사삭제에 대해 최초로 합의한 사건은 2005서울조정138사건으로, 신문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를 기사는 물론 일반인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야후, 엠파스, 다음에 대해 해당 기사 삭제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사항에 포함하고 있다. 포털에 게시된 기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가 기사 삭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기사 삭제 대상은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삭제 요청이 뒤를 이었다. 조정대상이 된 기사의 일부분을 수정,

<표 8> 오프라인 언론사 보도로 인한 피해의 온라인상의 구제 현황

| 구 분 \ 연 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오프라인 언론 | 139 | 288 | 267 | 252 | 268 |
|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 11(7.9%) | 11(3.8%) | 30(11.2%) | 80(31.7%) | 78(29.1%) |
| 포털 | 10(7.2%) | 7(2.4%) | 3(1.1%) | 12(4.8%) | 17(6.3%) |
| 계 | 21(15.1%) | 18(6.3%) | 33(12.4%) | 92(36.5%) | 95(35.4%) |

11) 양경승, 인터넷공간상의 표현행위와 그 침해 구제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언론중재법 개정 심포지엄 발표문, 2008.

12) 이재진, 구분권,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한국방송학보>, 2008.

13) 김상우, 인터넷 미디어에서의 반론권 적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129.

인터넷언론은 게재방법 지정항목에 있어 신문이나 방송 등 기존매체와 달리 화면위치, 게재기간, 링크 여부, 검색, 기사순서 등 매체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하는 요청도 합의사항에 종종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잡는 부분을 수정하여 신문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반론보도문을 하단에 이어 게재하도록 한 2008서울조정177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터넷언론은 기사의 부분 수정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사실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정정이나 반론보도 외에 원 보도의 일부 사실적 주장에 대한 수정 요구가 무리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8. 온라인 매체의 특성 고려

1) 온라인매체의 보도방법

언론중재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정보도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전통적인 언론의 범주에 속하는 신문과 방송에 국한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 온라인 언론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조사대상 사건을 살펴본 결과 신문과 방송의 일반적인 보도방법은 아래와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다.

• 신문의 보도방법 지정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일보 6면 우측 하단에 박스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부제목과 같은 활자로 하고, 본문은 같은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2005년 8월 18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2005서울조정1)

〈표 9〉 기사삭제 및 수정이 포함된 사례

| 구 분 \ 연 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 언론사 홈피 삭제 | 10 | 6 | 11 | 23 | 15 | 65 |
| 인터넷신문 기사 삭제 | 1 | 5 | 7 | 6 | 9 | 28 |
| 포털 삭제 요청 | 10 | 7 | 7 | 18 | 17 | 59 |
| 기사 수정 | - | - | 2 | 8 | 9 | 19 |
| 계 | 21 | 18 | 27 | 55 | 50 | 171 |

• 방송의 보도방법 지정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말미에 2005. 9. 23. 혹은 9. 26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한다.(2005서울조정56)

신문은 보도날짜와 게재 지면, 기사제목과 본문 활자크기를 기본적인 보도방법으로 제시하고 상자 기사 처리여부를 부가적으로 포함하는 형태이다. 방송은 보도날짜와 프로그램명, 자막, 음성 등을 기본적인 보도방법으로 하고 배경이나 스크롤 처리여부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반면 인터넷언론은 아래와 같이 신문이나 방송의 기본적인 보도방법 지정 항목과 달리 설정되고 있다. 통상적인 신문의 보도방법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임의로 정정보도를 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언론의 매체 특성을 고려한 보도방법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 인터넷신문의 보도방법 지정
 2009. 4. 20. 오전 9시부터 피신청인이 발간하는 인터

넷신문 ○○○○ 초기화면의 상위 10번째 위치에 1일간 게재하고 이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게 한다.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2009서울조정129)

• 포털의 보도방법
 피신청인은 기사제공언론사가 신청인에 대한 기사를 전송해 오는 시점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메인화면(www.naver.com)에 뉴스캐스트 ○○일보란에 6시간 이상 이를 게재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뉴스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2009서울조정697)

조사결과 보도 날짜와 게재 화면위치, 게재기간, 링크 순으로 보도방법을 지정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날짜는 조사대상 사건의 95% 이상이 합의사항에 명시했고, 화면위치를 지정하는 경우도 87.3%, 게재기간에 대해서는 84.1%가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링크여부(67.5%), 활자크기(51.6%), 검색(27.4%), 기사순서(16.6%) 순으로 보도방법 항목을 지정하고 있다.

<표 10> 인터넷신문과 포털의 보도방법

| 연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 날짜 | 15(100%) | 22(100%) | 22(88%) | 34(91.9%) | 57(98.3%) | 150(95.5%) |
| 게재기간 | 13(86.7%) | 16(72.7%) | 24(96%) | 32(86.5%) | 47(81.0%) | 132(84.1%) |
| 화면위치 | 12(80%) | 19(86.4%) | 23(92%) | 34(91.9%) | 49(84.5%) | 137(87.3%) |
| 활자크기 | 6(40%) | 11(50%) | 14(56%) | 13(35.1%) | 37(63.8%) | 81(51.6%) |
| 기사순서 | 1(6.7%) | 3(13.6%) | 4(16%) | 6(16.2%) | 12(20.7%) | 26(16.6%) |
| 링크 | 7(46.7%) | 11(50%) | 20(80%) | 26(70.3%) | 42(72.4%) | 106(67.5%) |
| 검색 등 | - | 2(9.1%) | 8(32%) | 17(45.9%) | 16(27.6%) | 43(27.4%) |
| 조사대상 사건수 | 15 | 22 | 25 | 37 | 58 | 157 |

인터넷신문 등의 피해구제 보도 게재기간은 2006년부터는 24시간으로 정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최소한 통상적인 기사 업데이트 주기 수준에서 노출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오프라인 신문매체에서 기본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활자크기에 대해서는 51.6% 정도만이 합의사항에 담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인터넷신문 등의 피해구제보도 게재 기간

인터넷언론에 게재된 피해구제보도를 많은 네티즌들이 접하기 위해서는 보도의 노출시간이 중요하다. 신문 등 오프라인 매체와 달리 인터넷언론의 경우 기사가 빈번하게 바뀌는 특성 탓에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시간의 길고 짧음에 기사의 생명력이 좌우되기도 한다.

중재부와 양 당사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노출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인터넷신문이 처음 조정대상에 편입된 2005년도에는 노출시간에 대한 합의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피해구제보도의 노출시간을 3시간 이내로 하기로 의견을 모은 사례가 3건, 5일에서 7일간 게재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4건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적정 노출시간을 24시간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12시간 초과 24시간으로 정한 경우가 2006년 43.8%로 가장 많은 이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시간대가 54.2%, 62.5%, 4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24시간을 노출시간으로 지정한 경우가 많다고 하여도 이를 합리적인 수준이라 기능하기는 곤란하다. 이는 인터넷언론의 경우 기사 업데이트 주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최소한 통상적인 기사 업데이트 주기 수준에서 노출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표 11〉 온라인 언론매체의 피해구제보도 게재기간

| 시 간 \ 연 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 ~ 3시간 | 3 | - | - | 1 | - | 4(3.0%) |
| ~ 12시간 | - | 1 | 1 | 1 | 5 | 8(6.1%) |
| ~ 24시간 | 2 | 7 | 13 | 20 | 21 | 63(47.8%) |
| ~ 3일간 | 3 | 2 | 6 | 6 | 3 | 20(15.2%) |
| ~ 5일간 | 1 | 2 | 2 | 2 | 1 | 8(6.1%) |
| ~ 7일간 | 4 | 1 | 1 | - | 6 | 12(9.1%) |
| 7일 이상 | - | 3 | 1 | 2 | 11 | 17(12.9%) |
| 계 | 13 | 16 | 24 | 32 | 47 | 132 |



9. 합의사항 이행 정도

조정과정에서 신청인은 조정합의서에 서명하며, 합의사항의 제반 조건이 충실히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합의사항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총 조사대상 1,427건 중 합의사항 중 일부 조항을 어긴 경우는 114건으로 8.0%에 불과하며, 대부분 보도내용과 보도방법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합의사항을 벗어나는 경우는 정정 혹은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언론사가 임의로 수정, 변경하는 것이다.

“반론보도문”을 “반론 신습니다”(2005서울조정 4, 2005서울조정69 등), “밝혀왔습니다”를 “반론보도문”으로(2009서울조정476), “정정보도문”을 “바로잡습니다”(2005서울조정37, 2009광주조정1 등), “정정보도문”을 “정정”(2005경기조정21)으로 변경하는 정도는 그나마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범위를 훌쩍 넘어 합의사항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여겨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부분 기사제목만 보더라도 기사에 대해 누가 어떠한 내용을 제기했는지 한 눈에 알수 있는 제목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다.

“피해자 오인 체포 아니다 - 중부경찰서 해명” ⇒ “반론보도문”(2005전북조정8)

“노동부 반론” ⇒ “알림”(2007서울조정64)

“방송영상진흥원 관련 정정” ⇒ 알림(2007서울조정72)

“‘○○동 ○○번지 주민들 화났다’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 ⇒ “바로잡습니다(2007서울조정258)

“송○○주민 일부 시의 참여” ⇒ “바로잡습니다”(2007서울조정439)

“한마음고 파행 사실과 달라” ⇒ “바로잡습니다”(2008대전조정3,4)

“‘회의 즐기는 ○○부시장 관련,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문” ⇒ “정정보도”(2008경기조정34)

“고양 덕이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 관련 반론보도문” ⇒ “알려왔습니다”(2008서울조정258)

“시의원의 급식 육류 납품 이권개입 제목은 사실과 달라” ⇒ “바로잡습니다”(2008경기조정49)

〈표 12〉 합의사항 불이행 유형

| 연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계 |
|---------------|------|------|------|------|------|-----|
| 합의사항불이행 | | | | | | |
| 보도문 제목 변경 | 9 | 3 | 19 | 35 | 18 | 84 |
| 보도내용 변경 | - | 1 | 1 | 2 | 1 | 5 |
| 보도일자 내지 시간 변경 | 3 | - | 1 | 3 | 2 | 9 |
| 보도지면 변경 | - | 2 | 3 | 3 | 3 | 11 |
| 프로그램 변경 | - | 1 | - | - | - | 1 |
| 보도자체 불이행 | - | - | - | 3 | 1 | 4 |
| 소 계 | 12 | 7 | 24 | 46 | 25 | 114 |

조정과정에서 전개되는 피해구제의 영역이 해마다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즉, 법 조항에 근거한 보도와 손해배상 외에 유감표명, 기사수정, 재방영금지, 기사삭제, 검색 제한 내지 정정보도문의 검색 허용, 취재보도 개선 약속 등 다양한 피해회복 및 화해방안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보도를 약속한 날짜까지 보도를 하지 않거나(2005서울조정226, 2005서울조정169), 방송시간대를 변경하는 경우(2005서울조정158 : 20:00에서 22:00), 9시뉴스에 보도하기로 합의하고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방영한 사례(2006서울조정215), 보도지면을 변경(2006서울조정523, 164 등) 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10. 조정양상의 변화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회복을 위한 청구권은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뿐이다. 크게 피해구제보도와 위자료를 구하는 것 외에 공식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이다.

<표 13>은 조정과정에서 전개되는 피해구제의 영역이 해마다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 조항에 근거한 보도와 손해배상 외에 유감표명, 기사수정, 재방영금지, 기사삭제, 검색 제한 내지 정정보도문의 검색 허용, 취재보도 개선 약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해회복 및 화해 방안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추가보도 및 재방영을 금지하는 조건을 내세운 사건(2008서울조정365), 반론보도하면서 언론사의 재보도를 금한 사례(2008서울조정262), 유감을 서면으로 전달하며, 기념품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2009서울조정309), 피신청인이 군소언론인 경우 신청인 거주 지역에 신문을 추가 배포(2008제주조정3)하기로 한 조정사건도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를 신문 무료 구독으로 대체(2006서울조정103, 2006서울조정312)하거나 신청인의 차량번호를 공개한 데 대해 자동차번호판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화해(2007충북조정13), 광고 무료 게재를 제안하는 것(2007서울조정320) 등은 조정절차의 유연함과 상황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배상(위자료)이 지급된 사례가 5.6%에 지나지 않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대상 사건 가운데 손해배상청구사건이 32.3%임을 감안하면 대부분 행사한 청구권과 관계없는 피해회복 방안으로 조정성립되었거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 다른 회복 방안의 수용을 전

제로 청구를 포기한 결과이다. 다양한 회복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고무적이나 손해배상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아직까지 피해구제보도와 손해배상 외에 다른 구제 영역에 대해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청구권에 얽매이지 않고 다종다양한 사안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유연한 자세로 화해 방안의 폭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던가. 조정절차는 종종 “일도양단”으로 표현되는 재판과 비교된다. 유연한 사고 속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것이 조정이기 때문이다. “갈 때까지 가보자”

는 소송에 비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적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분쟁 조정은 14일이라는 짧은 기간과 무비용이 장점이다.

조사결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언론 분쟁해결의 장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신문에 뒤이어 포털과 언론사닷컴 등이 언론조정대상에 포함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보도 방법과 피해구제방안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적으로 부여된 청구권 외에 기사삭제나 기사수정, 유감표명 등을 피해회복 방안으로 활용하거나 법적 지위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비독립법인 언론사 인터넷홈페이지까지 조정영역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비록 사례는 많지 않으나 기사제목의 임의적인 변경이나 보도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합의사항을 어기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또한 정정이나 반론보

〈표 13〉 연도별 조정 내용의 변화

| 조정내용 | | 연 도 | | | | | 계 |
|------------|----------|------|------|------|------|------|--------------|
|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피해구제보도 | 정정, 반론보도 | 141 | 275 | 239 | 250 | 301 | 1,206(69.9%) |
| | 후속보도 | 2 | 11 | 12 | 4 | 20 | 49(2.8%) |
| 손해배상 | 위자료 | 14 | 20 | 24 | 16 | 22 | 96(5.6%) |
| | 현물지급 | - | 4 | 2 | - | 1 | 7(0.4%) |
| 유감(사과)표명 | | - | 5 | 12 | 11 | 27 | 55(3.2%) |
| 기사수정 | | - | - | 2 | 8 | 9 | 19(1.1%) |
| 재방영(판매)금지 | | - | - | 2 | 5 | 3 | 10(0.5%) |
| 기사삭제 | | 21 | 18 | 25 | 47 | 48 | 159(9.2%) |
| 검 색 | | - | 3 | 14 | 54 | 39 | 110(9.2%) |
| 취재보도 개선 약속 | | - | 1 | - | 6 | 8 | 15(0.9%) |
| 소 계 | | 154 | 337 | 332 | 401 | 478 | 1,726 |

분석결과, 인터넷신문에 뒤이어 포털과 언론사닷컴 등이 언론조정대상에 포함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보도방법과 피해구제방안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를 신문의 독자투고란이나 방송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게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재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법률 개정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또한 신문과 방송에 이어 인터넷언론의 보도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률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경근, 포털뉴스 피해구제에 관한 언론중재법 검토, <언론중재>, 2008년 가을호.
- 김상우, 인터넷 미디어에서의 반론권 적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문종대, 한국언론의 정정기사 보도현황 분석, <언론중재>, 2001, 봄호.
-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언론중재>, 1991 겨울..
- 양경승, 인터넷공간상의 표현행위와 그 침해 구제방안,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언론중재법 개정 심포지엄 발표문, 2008.
- 양재규,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 검토, <언론중재>, 2009년 가을호.
- 언론중재위원회, <연차보고서>, 2005~2007.
 <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 2008~2009.
- 이재진·구분권,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한국방송학보>, 22-3호, 2008.
- 장호순, 위원회 조정사례 및 법원 판결을 통해 본 보도의 문제점과 피해구제, <언론중재>, 2008년 봄호.